

접 수	의안과 - (20 :)
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수 신 : 의 장

제 목 :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관한 개정 입법청원

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.

- 붙 임 1. 청원소개의견서 3부
2. 청 원 서 3부. 끝.

2013년 8월 11일

청 원 인

성 명 : 윤 혜 린

주 소 :

전화번호 : (휴대전화 :)

소 개 의 원 : 윤혜린 외 13인

공동발의자::김성준,이재영,이재순,강선우,한선희,박솔해,김혜림,문경미,이소윤,최예림,김이준,이보름,김지윤

						의 장
담당자	청원담당	과 장	국 장	차 장	총 장	

청원소개의견서

청원인	주소 : 성명 : 윤혜린
건명	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관한 개정 입법청원
소개년월일	2013년 8월 11일
<p>소개의견</p> <p>청원인 윤혜린 외 13명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청소년의원입니다. 현재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에 는 헌정회 연로회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충당하기 위한 지원금이 정해져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. 위 법안 때문에 대대적인 국민 서명운동이 시행되고 있고, 국회의원 중에도 위 법안에 대한 폐지 청원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. 따라서 지원금지급대상, 지원 금액, 그리고 개인으로부터 금전적 지 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합니다.</p> <p>지원금 지급 대상은 시민단체 연합으로부터 모범 국회의원 상을 받은 자에 한하며, 지원금은 각 년도 국회의원 월급의 8%로 정합니다.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지지하기 위해 대한민국헌정회 연금법에 추가 개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.</p> <p>청소년의회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</p> <p>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2조(보조금의 교부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연로회원(회원 중 전 국시민단체 총연합회로부터 모범 국회의원 상을 수여받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.) 지원에 필요한 자 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</p> <p>②헌정회는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.</p> <p>제2조의2(연로회원지원금) ① 헌정회는 연로 회원 중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비례한 해 당년도 국회의원의 월급의 8%의 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신구문대표조</p>	
현행	개정문
<p>제2조(보조금의 교부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는 헌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연로회원(회원 중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지원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 금을 교부할 수 있다.</p> <p>②헌정회는 개인·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금전 기 타 재산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.</p> <p>제2조의2(연로회원지원금) ① 헌정회는 연로회 원에 대하여 지원금(이하 "연로회원지원금"이라 한 다)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(보조금의 교부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는 헌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연로회원(회원 중 전국시민단체 총연합회로부터 모범 국회의원 상을 수여받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.) 지원 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 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</p> <p>②헌정회는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금전 기타 재 산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.</p> <p>제2조의2(연로회원지원금) ① 헌정회는 연로 회 원 중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비례 한 해당년도 국회의원의 월급의 8%의 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다.</p>

소 개 의 원

인

청원서

1. 제안이유

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통령 후보자들께서 제안한 공약중 하나인 ‘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폐지’공약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.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은 지원금 수급 대상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객관적이지 않습니다. 또한 이 법안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예산을 오용하는 법안으로써, 많은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한 증거로는 최근 한 포털 사이트에서 ‘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폐지’에 대한 서명이 만 명을 넘는 사례가 있습니다. 이처럼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환기함으로써 국회의원은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, 국민은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,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을 보다 합리적인 법안으로 개선해야 합니다. 따라서 아래와 같은 법안 개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.

2. 주요골자

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보조금의 교부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연로회원(회원 중 전국시민단체 총연합회로부터 모범 국회의원 상을 수여받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.) 지원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헌정회는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.

제2조의2(연로회원지원금) ① 헌정회는 연로 회원 중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비례한 해당년도 국회의원의 월급의 8%의 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다.

신구문대표조

현행	개정문
제2조(보조금의 교부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연로회원(회원 중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지원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 ②헌정회는 개인·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. 제2조의2(연로회원지원금) ① 헌정회는 연로 회원에 대하여 지원금(이하 "연로회원지원금"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	제2조(보조금의 교부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연로회원(회원 중 전국시민단체 총연합회로부터 모범 국회의원 상을 수여받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.) 지원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 ②헌정회는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. 제2조의2(연로회원지원금) ① 헌정회는 연로 회원 중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비례한 해당년도 국회의원의 월급의 8%의 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다.

청원인 성명 : 윤혜린